

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

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- 495호

2022년도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」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

2022년도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」 사업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6일

고용노동부장관

1.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」 사업개요

□ (의의) 국민취업지원제도*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,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

* (국민취업지원제도) 저소득층, 청년,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

□ (주요 내용) 일경험 기간·직무수준 등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

- (체험형) 2개월 내 단기간(30일 내외) 직무 체험(1주 20시간)
- (인턴형)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일경험 제공(1주 30~40시간)

□ (지원금액) ① 체험형은 참여수당 일 22,000원(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), ② 인턴형은 최저임금 기준 최대 월 1,914,440원(구직촉진수당 미지급)

- 추가로 참여자 1인당 기업에 멘토링 수당(월 10만원) 지급

□ (참여자 지위) ① 체험형 참여자는 수련생의 지위, ②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자로서 참여기업과 근로계약 체결(4대보험 가입)

2. '22년 위탁 관련 주요내용

□ (위탁규모) 2.5만명 (체험형 7.5천명, 인턴형 17.5천명)

□ (위탁기간) 2022.1.1.~2022.12.31.(1년)

* 단, 사후관리 기간으로 3개월 추가 가능(23.1.1~23.3.31)

□ (위탁내용) 참여기업 홍보 및 발굴, 참여자 상담, 참여기업-참여자 연계·선발·관리, 현장 지도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

- (기업)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홍보 및 안내, 참여기업 발굴·모집, 참여자 모집 공고·선발 지원, 신청서·운영계획서 작성 지원·검토, 지원금 신청서 작성 지원·검토, 현장 지도점검 등

- (참여자) 일경험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참여기업 안내, 선발·연계 지원,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 점검 등

- (기타) 일경험프로그램 업무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

□ (사업지역)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하며, 위탁기관은 해당 사업권역 내에서 참여기업 발굴

- (제1권역)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

- (제2권역)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·북도, 전라남·북도, 제주특별자치도

- (제3권역)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·북도

□ (위탁운영비) 기본금 및 성공금 지급

- (기본금) 체험형 5만원, 인턴형 10만원

- (성공금*) ▲ 체험형: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시 5만원

▲ 인턴형: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시 10만원, 취업시 5만원

*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도 겸업하는 경우 일경험 참여자 취업에 대해서는 일경험 취업성공금 부지급(국취 본사업 취업인센티브 지급)

3. 신청자격

- (신청자격)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(22.1.11까지 등록 예정인 경우 포함)
 -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 및 제19조의 유·무료 직업소개 사업자
 - 효율적 사업운동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, 일부 업무를 보조기관 등에 재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이 경우,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동을 도모하여야 함
 - * 다만,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접수·심사, 지원금 신청 접수·지급,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접 수행
 - '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(사업자)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사업(청년특화 포함) 겸업 운영 가능

- (신청제한) 다만,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(사업자)은 자격제외
 - 1)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(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)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고용센터에서 확인)
 - 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 - 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[참고]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

- 직업안정법 제3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·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이 법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청소년 보호법」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「선원법」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다.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6.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7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2)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(사업자)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- ㉠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(사업자)
- ㉡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(사업자)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(사업자)
 - * 취성패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 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'22년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사업 참여 가능
- ㉢ '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'22년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관(사업자)

3)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(사업자)

- 단, 「직업능력개발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

[참고]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규정

-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) 법 제16조 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와 같다
 1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3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 4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 5.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
□ (시설 요건) '일경험프로그램' 상담 및 참여자 선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운영 공간 구비*

* 국취 위탁사업을 겸업하는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설과 공동 활용 가능

- 운영기관은 필요시 별도 운영공간을 활용하여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사전교육·OJT, 참여기업-참여자 선발을 위한 면접 등을 진행하거나
- 소재지 외 사업지역으로 출장 상담 등을 할 수 있어야 함

4. 위탁기관 선정 절차

① 신청서 접수

- (신청서 접수) “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사업 참여 신청서”(서식 1)는 관할고용센터별로 접수

신청기간	2021. 12. 7.(화) ~ 2021. 12. 17.(금)
신청방법	직접 또는 우편 (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접수처	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청서 ②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법인설립허가증, 위탁희망 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, 직업소개사업 신고.등록증 등) ⑤ 제안 신청서를 담은 USB 1개 (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서 내려받아 작성 *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

- (기본요건 확인) 관할 고용센터별로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

② 위탁기관 심사·선정

- (선정심사 위원회) 1개 (지)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,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출신(주요 업무장소가 타 (지)청 관내)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2명 이상 되도록 구성

*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위탁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(과거 근무자 포함) 등 직.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위원에서 배제

* 청별 심사위원 풀(pool) 구축 후 지청 단위로 심사위원회 운영

【지청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】

- ▶ (구성) (지)청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
 - 1개 (지)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센터 소장이 위원장(고용센터가 여러 개인 경우 (지)청 단위에서 협의하여 결정)이 되고, 동 선정심사위원회에 학계 및 지자체, 현장 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→ 총 7인(위원장 포함)
- ▶ (운영)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- (심사절차) 서면심사, 현장실사, PT심사를 실시하고, 세부 일정은 지방관서 별로 추후 통보

- (심사 기준) 사업계획의 타당성(20점), 사업수행능력(60점), 인적자원 투자계획(20점)을 기준으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**【붙임 2 참조】**

- (결과 통보)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문서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통보
 - * 선정결과 통보시, 예비 사업자(3개소 이내) 통보 가능

③ 위탁계약 체결

- 심사결과 순위내에 포함된 위탁 사업자의 선정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요건 충족시 위탁계약 체결

* 순위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,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시 계약체결

- 선정결과는 기관별로 개별 문서 통지(“22.1.7(금)까지)

* 신청서 제출기관 중 심사결과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,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- 계약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“지방관서 분임계약관”과 위탁기관(사업자)간에 체결(“22.1.12.(수)까지)

* 고용센터 소장 또는 국민취업지원과(팀)장 등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

- 계약체결시 임금체불 금지, 4대 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 준수 등 ‘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’ 작성<구비서류 1-4>

5. 문의처

- ‘22년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문의(붙임 1 참조)

붙임 1

'22년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예정 위탁기관 수

연번	고용노동지청명	'21년 위탁기관수 (11개소)	'22년 선정예정 위탁기관수 (약 70개소)*
1	서울지방고용노동청	1	3
2	서울강남지청		1
3	서울동부지청		2
4	서울서부지청		3
5	서울남부지청		2
6	서울북부지청		2
7	서울관악지청		2
8	중부지방고용노동청	1	2
9	인천북부지청		1
10	부천시청		2
11	의정부지청		1
12	고양지청		1
13	경기지청	1	2
14	성남지청		2
15	안양지청		1
16	안산지청		1
17	평택지청		1
18	강원지청	1	1
19	강릉지청		2
20	원주지청		2
21	태백지청		1
22	영월출장소		
23	부산지방고용노동청	2	2
24	부산동부지청		1
25	부산북부지청		1
26	창원지청		2
27	울산지청		1
28	양산지청		2
29	진주지청		2
30	통영지청		2
31	대구지방고용노동청	1	2
32	대구서부지청		1
33	포항지청		1
34	구미지청		1
35	영주지청		1
36	안동지청		1
37	광주지방고용노동청	3	2
38	전주지청		1
39	익산지청		1
40	군산지청		1
41	목포지청		1
42	여수지청		1
43	대전지방고용노동청	1	2
44	청주지청		1
45	천안지청		1
46	충주지청		1
47	보령지청		1
48	서산출장소		1
49	제주특별자치도		1

* '22년 선정예정 기관수는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및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추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

[참고] 지청별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

고용노동지청명	고용센터명	담당자 연락처	고용노동지청명	고용센터명	담당자 연락처
서울지방고용노동청	서울고용센터	02-2004-7052	창원지청	창원고용센터	055-239-5358
	서초고용센터	02-580-4923		마산고용센터	055-259-1571
서울강남지청	서울강남고용센터	02-3468-4749	울산지청	울산고용센터	052-228-1996
서울동부지청	서울동부고용센터	02-2142-8992	양산지청	김해고용센터	055-330-6401
서울서부지청	서울서부고용센터	02-2077-3478		양산고용센터	055-379-2465
서울남부지청	서울남부고용센터	02-2639-2477		밀양고용센터	055-350-2804
서울북부지청	서울북부고용센터	02-2171-1745	진주지청	진주고용센터	055-760-6704
서울관악지청	서울관악고용센터	02-3282-0613	통영지청	통영고용센터	055-650-1836
중부지방고용노동청	인천고용센터	032-460-4796		거제고용센터	055-730-1964
인천북부지청	인천북부고용센터	032-540-5870	대구지방고용노동청	대구고용센터	053-667-6147
	인천서부고용센터	032-540-2019		대구강북고용센터	053-606-8046
부천시청	부천고용센터	032-320-8915		대구동부고용센터	053-667-6937
	김포고용센터	031-999-0936		경산고용센터	053-667-6802
의정부지청	의정부고용센터	031-828-0996	대구서부지청	대구서부고용센터	053-605-6435
	구리고용센터	031-560-5871		대구달성고용센터	053-605-9543
	남양주고용센터	031-560-1981	포항지청	칠곡고용센터	054-970-1910
	동두천고용센터	031-860-1712		포항고용센터	054-288-3560
고양지청	양주고용센터	031-849-2379	구미지청	경주고용센터	054-778-2506
	고양고용센터	031-920-3968		구미고용센터	054-440-3397
	파주고용센터	031-860-0422		김천고용센터	054-429-8903
경기지청	수원고용센터	031-231-7963	영주지청	영주고용센터	054-639-1136
	용인고용센터	031-289-2287		문경고용센터	054-559-8251
	화성고용센터	031-290-0802	안동지청	안동고용센터	054-851-8071
성남지청	성남고용센터	031-739-3125	광주지방고용노동청	광주고용센터	062-609-8536
	경기광주고용센터	031-799-2709	전주지청	진주고용센터	063-270-9179
	이천고용센터	031-644-3883		정읍고용센터	063-530-7503
	하남고용센터	031-730-7060		남원고용센터	063-630-3914
안양지청	안양고용센터	031-463-3854	익산지청	익산고용센터	063-840-6557
	광명고용센터	02-2680-1512	군산지청	군산고용센터	063-450-0650
	의왕고용센터	031-463-7479	목포지청	목포고용센터	061-280-0595
안산지청	안산고용센터	031-412-6619	여수지청	순천고용센터	061-720-9110
	시흥고용센터	031-496-1951		여수고용센터	061-650-0177
평택지청	평택고용센터	031-646-1271	대전지방고용노동청	광양고용센터	061-798-1903
	오산고용센터	031-8024-9880		대전고용센터	042-480-3964
	안성고용센터	031-686-1720		세종고용센터	044-861-8954
강원지청	춘천고용센터	033-250-1959		공주고용센터	041-851-8506
강릉지청	강릉고용센터	033-610-1943	청주지청	논산고용센터	041-731-8611
	속초고용센터	033-630-1902		청주고용센터	043-230-6768
원주지청	원주고용센터	033-769-0918		옥천고용센터	043-730-4107
태백지청	태백고용센터	033-550-8633	천안지청	천안고용센터	041-620-9590
	삼척고용센터	033-570-1910		아산고용센터	041-570-5554
영월출장소	영월고용센터	033-371-6255	충주지청	충주고용센터	043-850-4025
부산지방고용노동청	부산고용센터	051-860-1973		계천고용센터	043-640-9317
부산동부지청	부산동부고용센터	051-760-7195	보령지청	음성고용센터	043-880-8609
부산북부지청	부산북부고용센터	051-330-9992		보령고용센터	041-930-6206
제주특별자치도	제주고용센터	064-710-4480	서산출장소	서산고용센터	041-661-5612

붙임 2 '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 심사 세부기준

심사항목	세부항목	심사기준
사업계획의 타당성 (20점)	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(10점)	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*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전략 및 위탁사업 운영 목표가 적절한지 검토
	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(10점)	사업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 포함 여부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
사업수행능력 (60점)	참여기업 보유 현황(25점)	지역 내 네트워크(대학, 산업 협·단체 MOU) 또는 개별 사업장 등 구인처 보유·관리현황
	최근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(일경험 포함), 유사사업 추진실적(15점)	최근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(일경험 포함), 일경험 관련 유사사업의 추진실적
	참여자·참여기업 연계 및 관리방안(10점)	참여자·참여기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방안, 연계 이후 참여자 근퇴·근속관리 방안
	인력·시설 등 인프라의 적절성(10점)	일경험 전담 인력 및 시설 등 위탁사업 수행을 적정 인프라 구축 여부
인적자원 투자계획 (20점)	임금지급수준(10점)	'22년 업무담당자 임금 평균
	직원 사기증진 계획(10점)	제출된 성과상여금 및 사기진작 계획 등

[참고] 인적자원 투자계획 평가지침

① 임금지급수준 관련

-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(근로기준법상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, 연차수당 제외)을 모두 포함한 연간 보수 총액
 - 성과급: 고정적·정기적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닌, 상담실적 등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

- 평가방식: 제출된 '22년도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에 최고점을 부여한 후, 비례하여 차등 점수 부여(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)

- 전체 업무담당자 임금 평균 = $\frac{\text{업무담당자 전체의 임금총액}}{\text{업무담당자 총인원수}}$

* 예시: : A기관 4,000만원, B기관 2,000만원 → A기관 5점, B기관 2.5점

② 사기진작 방안 등

- 성과상여금 운영계획, 직원사기진작 등 프로그램 미제출시, 관련 부분은 각 0점 처리되며, 제출할 경우 각각 배점 내에서 점수 부여*

* 각 항목별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
<서식 1>

- (단 독) 『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』 운영기관 참여신청서
- (컨소시엄) 『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』 운영기관 참여신청서

사업체 (기관) 현황 (운영기관)	사업수행기관		법인등록번호		
			사업자등록번호, (또는 고유번호증)		
	소재지				
	대표자		생년월일		
	전화번호 (Fax 번호)		담당자 전자우편 주소		
	직업소개업 등록 여부		□등록 □미등록 □신고서 제출(제출일:)		
	유형		□ 비영리 □ 영리	직업소개 유·무료 여부	□ 무료 □ 유료
4대 보험 가입여부(○,×)		고용보험	산재보험	건강보험	국민연금
사업체 (기관) 현황 (보조기관)	사업수행기관		법인등록번호		
			사업자등록번호, (또는 고유번호증)		
	소재지				
	대표자		생년월일		
*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	전화번호 (Fax 번호)		담당자 전자우편 주소		
	컨소시엄 사업내용		보조사업비율 (위탁비 기준)		
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서		○○고용노동지청 ○○고용센터			
※ 사무소 설치 희망 관할 관서(○○지청 ○○고용센터)는 1개만 명시 - 2개 이상의 고용센터에 각각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- 하나의 고용센터에 2개 이상의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무소별 각각 제출					
2022년도 『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』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22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○○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(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 후 8부 첨부(USB, 전자우편으로 별도제출)) 1. 사업체(기관)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(입증자료 첨부) 2. 사업계획서 3.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건물 평면도 사본,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) *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* 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호, 3호, 5호의 기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					

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

1. 사업수행기관 현황(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)

① 인력현황

- 총 종사자 수: 명(대표자·예정인원 포함,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
- 총 상시근로자수 및 업무담당자수(“21.12.7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

구분	사업장 총 상시근로자수	일경험프로그램 업무담당자수
인원수		

- 일경험프로그램 업무담당자 채용 계획

② 조직현황

- 조직 예정인 경우 포함
 ※ 별도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‘해당 없음’ 표기

* 조직도 존재 시, 표 안에 표기

③ 물적 현황(시설 등)

○ 총 면적 : () 평방미터 / () 평

○ 세부시설 현황

구 분	면 적 (평방미터)	구체적인 활용내역	비고
사무실			
상담실			
교육장			
기 타			

* 상담실, 교육장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,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

* '기타'에는 휴게실, 면접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사항 표기

건물 외관	건물 내부시설
사진 추가	사진 추가

건물 내부시설(상담실)	건물 내부시설(교육장)
사진 추가	사진 추가

*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

2. 최근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프로그램 또는 유사사업 추진현황(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)

*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'해당 사항 없음' 표기

* 위탁기관 선정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실적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정량실적과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

① 국민취업지원제도(舊 취업성공패키지) 및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수행 실적

구 분	사업 수행 실적
2019년	• •
2020년	• •
20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량실적은 참여기업(대기업/중소·중견기업/공공기관/기타 등), 참여인원, 수료인원, 취업자 수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• 정성실적은 사업운영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

② 유사사업 추진 실적(인턴·일경험 분야)

구 분	사업 수행 실적
2019년	• •
2020년	• •
20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: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취업아카데미, 고용 디딤돌, 타 부처·자치단체 일경험프로그램 등 유관 사업 운영실적 • 정량실적은 참여기업, 참여인원, 수료인원, 취업자 수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• 정성실적은 사업운영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

③ 공모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시 주요 지적사항

- * 작성대상: 정부(중앙·지방) 위탁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,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지도·점검시 '시정요구'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,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,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있는 경우 등

구 분	주요 지적사항
2019년	• •
2020년	• •
2021년	• 예: 워크넷 구직신청 임의삭제: 구직신청 100건 삭제, 관련자 3명 워크넷 아이디 회수조치 받음 • 예: 사망일자 이후 상담일지 부적정 등록 5명 확인되어 '시정요구'조치 받음

3. 기타

① 법인의 대표 및 임원현황(직업안정법 제 38조의 결격사유 확인용)

연번	성 명	직 위	생년월일	주소	본적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
- *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란을 추가하여 작성
- * 결격사유 조화를 위해 **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양식 자율)** 첨부 필요
법인의 대표·임원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사업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,
→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까지 결격사유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, 동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② '22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응모 현황

-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, '22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(예: 대학일자리센터 등) 선정공모에 지원한 현황
- *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(사업명, 발주기관, 사업내용) 적시

< 작성시 주의사항 >

- ◆ 2022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,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, 기타 구비서류 등을 **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, 2022년 연도 중 계약해지 될 수 있음**

사업실적 요약서

사업체명	
기존 국민취업지원 제도 (舊 취업성공 패키지) 및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 수행 실적	
기타 인턴·일경험 유관분야 사업수행 실적	

사업추진계획서

1. 사업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

2.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

- 참여기업 발굴 등 운영 목표 및 전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

3. 추진계획

가. 총 괄

나. 세부 추진계획(아래 사항은 반드시 기입하되, 추가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)

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방안

- 양질의 참여기업 보유 현황
- 참여기업 발굴 계획을 기업 특성별(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) 모집방안을 구분하여 작성
- 참여기업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활용 방안

참여자·참여기업 연계 및 관리방안

- 참여자와 참여기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아이디어 등 구체적 방안
- 연계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 관리 방안 등

인적자원 투자계획

○ '22년 임금지급계획

전체 일경험프로그램 업무담당자 인원수	전체 일경험프로그램 업무담당자 임금 총액

- '22년 업무담당자 전체의 연봉 지급계획을 필수로 기재

